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401

발의연월일: 2021. 2. 26.

발 의 자 : 태영호·조수진·김상훈

류호정・김선교・유경준

유상범 • 양금희 • 배현진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연간 12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 · 운영

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동물보호소"란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운영 등록) 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 영하려는 자는 동물의 구조·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소의 시설 등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 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동물보호소"란 비영리 목적
	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u>동물을</u>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u><신 설></u>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ㆍ
	운영 등록) 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의
	<u>구조·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u>
	<u>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소의
	시설 등 및 등록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u>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u> (생 략) 6. ~ 15. (생 략)

③ • ④ (생 략)

 5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보

 호소를 설치・운영한 자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 1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